

미국의 기록(records) 및 아카이브즈(archives)의 역사적 기원과 관리·보존의 역사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The Origin of Records and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ation of Archival System: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Early 17th Century to the Mid 20th

이선옥(Lee, Seon Ok)*

1. 머리말
2. 미국의 기록 및 아카이브즈의 역사적 기원
3. 18·19세기 미국의 기록물관리 전통
 - 1)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
 - 2) 역사 매뉴스크립트 관리 전통
4. 미국국립문서보존소(현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설립과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보존 체계
5. 맺음말
 - 1) 요약과 정리
 - 2) 제언 및 향후 과제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아카이브즈 전문 리서처.

■ 투고일: 2024년 03월 28일 ■ 최종심사일: 2024년 04월 01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4월 16일.

■ 기록학연구 80, 43-88,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0.043>



〈초록〉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역사는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며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며 미국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 또한 미국은 국제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식민지 자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영국 식민지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는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미국민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물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민의 삶과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또한 미국 고유의 역사성이 반영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 관리 전통과 역사 매뉴스크립트 관리 전통)을 살펴본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여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개념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미국국립문서보존소(NA), 미국국립문서기록서비스(NARS),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연방기록물센터(FRC), 기록물(records), 보존기록물(archives), 아카이브(archives), 매뉴스크립트, 생애주기이론, 공공기록물, 출처주의, 원질서원칙, 공공 기록·아카이브 관리 전통, 매뉴스크립트 관리 전통, 미국기록물관리체계

〈Abstract〉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is a relatively quiet latecomer to the traditional archives of the Western world. Although the United States lacks a long history of organized publ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it has developed a modern system optimized for the American historical context. This system focuses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vast amount of modern records produced and collected during the tumultuous 20th century. As a result, NARA has established a modern archival system that is optimized for the American historical context. The U.S. publ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records·archives are the proper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belong to the public. This concept originated during the British colonial era when records were used to safeguard the rights of the colonies as self-governing citizens. For Americans, records and archives have long been a symbol of the nation's identity, serving as a means of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s, rights,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country's history. It is natural, therefore, that American life and history should be documented, and that the recorded past should be managed and preserved for the nation's present and future. The publ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the result of a convergence of theories, practices, lessons learned, and ideas that have been shaped by the country's history, philosophies, and values about records, and its unique experience with records management. This paper traces the origins of records and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in a historical context to understand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life and records. It examines the process of forming a modern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is both uniquely American and universal to the American context without falling into the two

forms of traditions that reflect the uniqueness of American history.

Keywords: National 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ublic records·archives tradition, historical manuscript tradition, Federal Records Center, records life-cycling, public records, public archives, provenanc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NARA archival system

1. 머리말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¹⁾는 서구의 전통적인 국립기록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체계화된 미국의 공공 기록(records) 및 아카이브즈(archives)²⁾ 관리의 역사는

1) 미국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는 1934년에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1949년 미국 총무청의 소속기관이 되어 그 명칭을 국립문서기록서비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NARS)로 변경하였다. 1950년 연방기록물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미 전국에 걸쳐 연방기록물센터(Federal Records Center)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연방기록물센터는 1차 가치평가가 끝난 기록물을 보관하는 중간 지점이며 기록물에 대한 2차 가치평가가 이뤄진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설립된 국립문서보존소에 영구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워싱턴 DC 외곽에 제 2의 국립문서보존소를 건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들은 국립문서보존소에 이관되어 보존되었다. 국립문서보존소는 미총무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독립하면서 그 명칭을 국립문서기록서비스(NARS)에서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NARA)으로 변경하고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National Archives는 국립문서보존소로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아카이브즈(archives)를 보존기록이나 문서의 개념이 아닌 장소의 개념을 지칭할 때는 기록물보존소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했다. 또한 명칭변경 시기에 상관없이 NAR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했다.

2)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레코드’(records: 기록)와 ‘아카이브즈’(archives: 보존기록)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힌다. 기록(records)은 현용 기록을 의미하며 영구기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보존해 왔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조직화된 기록물 관리 이론과 이에 따른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반면,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면서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미국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공동체 내의 재판소와 교회, 의회를 중심으로 정착된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public records·archives tradition)과 18·19세기에 등장한 역사 매뉴스크립트 관리 전통(historical manuscript tradition)이 이질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발전해 왔다. 그리고 1934년 국립문서보존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도 이렇다 할 연방 차원의 기록물관리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정부 기록물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은 전국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었고 책임있는 중앙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주 차원의 주립기록물보존소와 역사학회가 중심이 되어 서로 다른 형태로 공공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을 관리·보존하였다. 미국에 국립문서보존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특정 주립기록물보존소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아키비스트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나 공공기록물위원회 등에서 발표되는 기록관리 방법론과 교훈 등을 토대로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시도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은 서구의 후발주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록물 평가되기 이전의 준현용 기록도 포함한다. 아카이브즈(archives)는 레코드의 직접 활용이 끝난 후, 역사·문화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된 영구기록물을 지칭한다. 아카이브즈는 일정한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이다. 또한 장소의 개념으로서 영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보존소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아카이브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영구기록물을 의미한다. 장소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아카이브즈 대신 기록물보존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 내에 거의 기적에 가까운 미국의 기록물 관리·보존 체계의 ‘현대화(modernization)’와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완성하며 발전해 왔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 방법론과 현대적 표준화는 세계의 공공기록물 관리계를 선도하고 있다. NARA는 전 세계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보존기관으로서의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기록에 대한 이러한 철학과 가치관은 미국이 태동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역사를 관통하며 형성되어 온 것이다. 미국인의 건국역사와 이념, 전통과 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미국의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미국인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미국인들은 기록과 아카이브즈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하고자 한다. 식민지 초기 시기부터 자치시민 혹은 미국인 일상의 삶은 이들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재판소, 교회, 의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기록을 통해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았다. 기록은 미국인의 일상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는 1934년 워싱턴 DC에 설립된 국립문서보존소 앞 두 개의 석상에 각각 새겨진 문구에서도 알 수 있다. ‘영원한 감시는 자유의 대가이다.’라는 문구와 ‘과거 유산은 미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다.’라는 문구에서도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물 관리·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바로 미국의 공공자산인 국가의 기록과 아카이브즈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임과 동시에 NARA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민의 기록에 대한 공공소유와 공공자산 개념은 미국의 연방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체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를 관통하며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공공기록물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인의 삶과 기록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둘째,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 강하게 뿌리내렸던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즈 전통과 역사 메뉴스크립트 전통)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적합한 미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현대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넷째,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해, 20세기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현실에 적합한 구조의 현대적 기록관리체계가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역사적 추동력과 동인을 파악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는 영국의 미국 식민지 정착기인 17세기부터 현재의 미국 기록물관리체계의 기틀이 확립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까지이다. 이는 영국의 개척인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NARA 설립 전후에 나타난 미국의 기록물관리 및 보존 전통과 체계의 변화양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변화의 동인과 변천 과정, 변화의 형태들을 탐구하는 역사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의 기록물관리 혹은 미국 NAR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실무적 목적의 사례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NARA라는 기관자체에 대한 연구나 미국의 기록물법제와 기록관리제도 연구 등에 국한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접근방식의 한계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기록물관리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행정중심의 실무

가치를 강조하고 기록 이용자보다는 생산자이자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실무적 목적에만 머물렀던 연구는 역설적으로 기록관리 실무에 실증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기능적·도구적 접근방식을 벗어나 역사적·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기록물관리의 기능과 기술을 넘어선 기존 아날로그 기록물과 역사·문화적 기록물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기록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문학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기록과 기록물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성찰과 역사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기록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미국의 기록물관리 역사 연구의 사례를 우리의 기록물관리 현실에 투영해 봄으로써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기록에 대한 그리고 기록물관리를 위한 인문학적인 융합적 사고와 이의 실천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미국의 기록(records) 및 아카이브즈(archives)의 역사적 기원

1607년 5월 24일, 104명의 영국인을 실은 3척의 이민선은 4개월의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미대륙 버지니아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대륙의 영국 식민지에 도착한 영국의 공식적인 이주민이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미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이민자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 청교도들이었다.³⁾ 이들은 미 동부 메사추세츠

3) 미국 초기 건국과정에서 영국을 위시한 유럽 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토착민 인디언을 몰아내고 그들이 모국에서 가져온 문화, 정치, 경제 제도를 그대로 미 대륙에 정착시킨다.

주에 정착했으며 이 중 41명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새로운 정부 건설에 관한 협약인 메이플라워 협약(Mayflower Compact)을 체결하였다. 메이플라워 협약은 개척지에서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초의 공적 법률 기록이기도 했다. 메이플라워 협약은 이에 서명한 승객의 명단 기록과 함께 필사본 형태로 메사추세츠 주립 도서관의 스페셜 아카이브즈 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다.⁴⁾

미대륙에서 식민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버지니아 주와 메사추세츠 주의 뒤를 이어, 미 동부 해안을 따라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미대륙의 영국 식민지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은 철저히 영국인의 전통과 정치·경제 제도를 답습하며 그들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초기 식민지 개척촌에서는 교회에 모여 법률을 만들었고 재판소(법원)를 세웠다. 또한 대표자 1명씩을 뽑아 대의제인 의회제가 시작되었다.

식민지에서의 초기 공공기록은 정착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법률기관인 재판소와 이들의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보존되었다(Frizroy, 1938, 118~121). 그러나 이 시기에 생산된 공공기록물은 그 수량과 종류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기록을 관리하는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기록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불필요하고 불편한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역할은 질서유지를 위한 법치와 세금징수였기 때문에 주로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존재한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17·18세기 초 무렵 미대륙으로 이주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영국의 이주민이 새로 정착한 곳을 식민지라고 불렀으며, 식민지에서는 영국의 종교, 전통 문화와 정치·경제 제도가 정착하고 변성하게 된다. 식민지에는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윤용희·윤이화, 2005, 3~5)

- 4) 메이플라워 협약에 따르면, ①국왕 제임스 1세(영국 왕)의 충실한 신민이 되고 ②기독교 신앙과 국왕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③개척지에서 질서유지와 식민지건설 목적을 위해 시민 정치체제를 결성하고, 식민지에 맞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헌법을 제정하고 공직을 만들어 이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서약이었다. “The Mayflower Compact (1620)”, U.S. Department of State Info USA. www.usinfo.state.gov/infousa/ (최종접속 2024.2.10.)

해 왔던 선조들의 기록을 찾고 싶어도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민 명단도 유명한 사람들에 한 해 영국이나 유럽 본토의 신문에 공개되었을 뿐이다. 또한 영국 식민지 정착민들의 개인기록이었던 군복무기록이나 이주기록, 상속기록 등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기록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장소, 각각의 자녀와 부모 이름, 거주지와 직업, 세례 날짜와 장소 등이 적힌 기록들이 그 당시 교회기록물로 드물게 존재한다(Gordon, 1971, 251~252). 당시의 자치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일상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재판소 기록물과 식민지 각 지역의 공동체 전체를 통치하는 관할 당국의 자치 대표들이 남긴 의회 기록물 등이 식민지 시대의 공공기록물로 남아있다.

식민지 초기, 안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척지에서 토지소유권과 재산권, 계약, 상업적 피해보상 등을 둘러싼 재판과 소송을 둘러싼 분쟁은 다반사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다. 식민지 개척자들의 소송문화는 재판소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재판소에 모여 소송다툼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 식민지 시대에는 자치 지역에 있는 재판소가 교회보다 주민들의 일상 삶에 더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영국 본토에서처럼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며 살고자 했던 그들은 점차적으로 식민지 자치 지역에서 지도자를 뽑고 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던 기관은 바로 재판소였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했던 재판장에게 그들의 삶을 의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재판소의 관련 공무원들이나 재판장이 만드는 법과 명령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보안관이 재판소에 제출하는 소환장이나 영장, 구속, 벌금, 처벌 등의 기록, 재판기록과 명령, 세금징수 관련 기록 등과 같은 공공 기록물은 재판소에서 관리되고 보존되었다(Fritzroy, 1938, 119). 영국 식민지 지역에서는 재판의 증거이자 식민지 개척자의 삶과 직결되는 증거로서의 기록은 중요해졌으며 이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

은 행위였다. 이들은 일찍부터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것이 공동체 차원의 책임으로 보았는데, 자치기관에서 문서를 관리·보관해 준다면 문서의 유실이나 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서의 고의적인 변조나 위조도 막아 줄 수 있었다(O'Toole, 2004, 56). 식민지 정착민들이 재판과 소송의 증거인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행위는 그들이 두고 온 영국 본토에서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본토의 전통을 따라 교회와 재판소를 통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그들 스스로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게 했으며 통치를 하도록 했다.⁵⁾

1754년 북미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지휘하에 1763년까지 계속되었던 7년여 간의 치열한 전투였다. 이 전투의 결과로 프랑스는 모든 식민지를 잃었고 영국은 북미 대륙의 거의 모든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국 본토 지배계급은 미국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작했고 이 전쟁에서 소요된 막대한 전쟁비용을 메우기 위해 과도한 세금징수와 수탈을 일삼았다. 그러나 식민지 영국인들은 무역 및 자치 정부를 운영하면서 누렸던 자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감을 얻으며 영국에 대한 의존도도 약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영국 식민지에 살고있는 자신들을 영국인이라기보다 점차 '미국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윤용희·윤용화, 2005, 7-8).

17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독립운동은 영국 이주민들의 자주독립정신과 아울러 영국 본국의 과도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촉발

5) 영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초기 미국 식민지는 두 종류의 형태로 건설되었다. 하나는 영국의 기업이 식민지 경영과 통치의 주체가 된 식민지이다. 이는 런던의 기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왕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아 개척민을 미대륙에 파견했던 형태의 식민지이다. 다른 하나는 국왕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은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식민지의 경영과 통치의 주체가 된 식민지를 말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 초기에는 런던의 기업들이 본사에서 식민지의 모든 일을 관할하였으나, 거리상의 차이로 점차 식민지의 지방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윤용희·윤이화, 2005, 3-5)

된 것이었다.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식민지의 총 13개 주⁶⁾의 대표들은 반영국 감정이 고조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 서로 단결하였다. 제2차 대륙회의에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미국인’으로 여기게 되었다(윤용희·윤이화, 2005, 12). 미국의 독립과 건국과정에 있던 18·19세기에 국가의 역사기록물과 이를 관리·보존하는 기록물보존소는 그들 국가의 건국이념과 가치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Peterson, 2001, 198~199).

식민지 초기의 교회와 법원 기록, 독립운동기록, 미국 건국과정에서의 의회기록, 전쟁기록 등 당대의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되는 주 차원의 주립기록물보존소와 역사학회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보존되었다(Cox, 1983, 31~41). 이 기록물 중,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독립 초기 13주 연합체가 생산했던 미의회 저널, 의회의장과 의회위원장들과 왕래한 서신, 해외공관과 주고받은 정치·외교 문서, 조지워싱턴 장군의 서신, 각 주의 대표 간에 소통해 온 서한 등 많은 원본들을 모아 5권의 문서집을 발간하였다. 이 문서집은 현재 대륙회의의 문서집 1774-1789(Continental Congress, 1774-1789)라는 제목으로 NARA에 소장되어 있다(NARA, M247; Musick, 1995).

3. 18·19세기 미국의 기록물관리 전통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서를 공표하였고 1783년 파리조약⁷⁾에 의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냈다. 그 당시 미국은 13

6) 제 2차 대륙회의에 참가했던 13개 주는 다음과 같다.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이다. 이 주의 각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채택하여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개의 주가 1787년 비준된 미헌법을 중심으로 연방을 이루고 있었던 신생국이었지만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삼권분립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이자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분배하여 통치하는 연방제 국가를 수립하였다. 미헌법이 제정되기 전, 1781년 13개 주는 연합규약조문을 13개 주가 비준하여 법률상의 준연방 국가로 시작했다. 이 연합규약에서는 중앙정부 없이 주정부가 연합한 형태의 국가체제였다. 중앙집권제를 전제왕권과 동일시하여 이를 독재와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정부간 이해를 조정하거나 외국과 교역을 관리할 중앙정부가 부재했다. 연합규약은 동맹조약과 다를 바 없었고, 각 주가 한 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구성되었을 뿐 미국 전체를 대표하고 통치하는 어떠한 형태의 독립된 중앙정부 조직을 갖지 못했다(신정현, 1994, 248~249; 윤용희·윤이화, 2005, 19).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권력이 더 강했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연방기록을 생산하고 관리·보존하는 일보다 주 차원의 공공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립기록물보존소와 미 전역에 흩어져 존재하는 역사기록물과 유물을 수집하여 보존했던 역사학회와 도서관, 박물관 등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확산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는 두 형태의 기록물 관리 전통이 이질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public records·archives tradition)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를 보완하는 차원으로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 매뉴스크립트 관리 전통(historical manuscripts tradition)이다.

7)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 전쟁이 지속되었던 1782년 초, 영국은 파리에서 미국과 강화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대륙회의는 1783년에 강화조약을 승인했고 영국과 미국은 같은 해, 9월 3일에 이 조약에 승인했다. (윤용희·윤이화, 2005, 16)

1)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Public Records·Archives Tradition)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은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민지 정착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자치마을을 형성하여 그들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의 대표자를 뽑고 시민자치를 시작했다. 식민지 초기 안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척지에서 토지소유권과 재산권, 계약 등을 둘러싼 재판과 분쟁을 조정하여 새로운 토지나 상권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은 식민지 개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시민자치기관은 새로운 땅에서의 토지 소유권이나 상권을 증거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시민자치기관은 기록의 생산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의 관리자로 미국 이주민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시민자치 공동체의 시민들은 기록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했다(O'Toole, 2004, 57). 이처럼 미국은 식민지 자치시대부터 시민 개개인이 기록의 보존과 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기록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은 미국의 공공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을 확산시키고 고취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책임 아래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했고 국민 또한 국가기록물을 보존하는 역할과 책임을 국가에 부여했다. 국가의 기록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기록’이 되었다.⁸⁾ 이는 국가의 기록을 국가와 국민의 공공자산으로 공정하게 관리·보존하고 국민 대중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기록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8) 이 저널에서는 “the records of democracy, ‘the people’s record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표현에서 착안하여 ‘국민의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Carlin, 2001)

갖는 것이 당연한 원리로 인식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미국 최상위의 권위를 가진 헌법에도 명시해 놓았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지 10년 뒤에 만들어진 미국의 헌법 초안에는 의사록 관리에 관한 내용⁹⁾과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효력을 규정하는 법제정의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는 내용¹⁰⁾을 각각 두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O'Toole, 2004, 57~58).

또한 공공 기록·아카이브즈에 대한 공공소유 개념은 1934년의 국립문서보존소법을 대체한 1950년 연방기록물법의 규정에도 나타나며, 1950년 연방기록물법과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을 대체한 2014년의 대통령기록물 및 연방기록물법의 개정안에서도 여지없이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국가의 기록이 국민의 기록이고 국민의 공공재산이자 소유라는 역사적 경험은 미국 기록관리 철학의 근간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철학과 신념은 미국에서 현대 기록물 관리체계를

-
- 9) 미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전문 제1조, 제5항 세번째 문단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 원은 출석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년 1월 최종 접속)
 - 10) 미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전문 제4조, 제1항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년 1월 최종 접속)
 - 11) 1950년 연방기록물법(The Federal Records Act of 1950)과 1978년 대통령 기록물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을 대체한 2014년의 미국 대통령기록물 및 연방기록물법 개정안(The Presidential Records Act of 2014)은 미국의 연방제 정치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연방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연방기록물, 즉 미국연방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공공기록물이 미국 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공공소유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키비스트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공기록물은 국가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충분한 역사적 또는 기타의 가치가 있다고 판별된 연방정부 기관, 의회, 연방대법원(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록물이다. (Public Law 113~187)

단시간 내에 확립할 수 있었던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은 19세기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과 함께 유럽의 아카이브즈 관리 전통 유산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기록은 기존의 중앙 왕실과 지방 영주, 교회 차원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생산되고 보존되어 왔던 관행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기록물이 관리·보존되는 체계로 발전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기록의 생산 및 활용, 관리와 보존 전반에 걸쳐 근대적 사고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기록물 관리체계 역사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 국가 차원의 근대 기록물보존소 모델의 토대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1789년 프랑스의 국립 문서보존소(France's Archives Nationales)와 1838년 영국의 공문서보존소(England's Public Record Office)의 설립으로 마련되었다. 이들 기록물보존소의 존재는 유럽의 이웃 국가들인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립기록물보존소 설립으로 이어졌다(McCoy, 1978, 3~4).

에른스트 포스너에 의하면, 프랑스 혁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럽 기록의 생산, 관리 및 보존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첫째,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공공 아카이브즈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¹²⁾ 둘째, 혁명 당시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던 기록물들을 불태우며 폐기하는 와중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은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시민 정부는 예술작품을 포함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과거 기록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중들에게 정부

12)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법령에 의해, 1789년 대혁명 직후 프랑스 국회 내의 기록물보존소 차원으로 설립되었던 국립문서보존소(The Archives Nationales)를 뛰어넘어 각 지방의 기존 문서보존소들의 기록까지 망라하여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뒤이어 혁명력 5년 뷔뮈메르 5일(1796년 10월 26일) 법령을 통해 각 지방의 문서보관소에 아카이브즈 부서(Archives Departmentales)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지방 문서보존소들의 오래된 역사기록물과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기록물들을 총체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했던 최초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Posner, 1940, 161~162)

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Posner, 1940, 161~162). 혁명시기의 이러한 정책들은 아카이브즈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접근을 자유롭게 하여 정치와 행정의 모든 과정들에 대중들이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사회를 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가 현실화되지는 못했다.¹³⁾

미국에 연방정부가 설립되고 성장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국에서는 공공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근대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현용기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 기록물관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전쟁 이후 연방기록물이 증가하여 누적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1800년과 1801년에 발생한 화재로 연방정부 전쟁국(the War Office)과 재무부(the Treasury Department)의 기록물들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험을 하였다. 화재를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서 수해, 곤충이나 설치류에 의한 피해, 극심한 추위나 더위, 곰팡이, 화학약품, 도난, 부주의, 방치 등과 같은 자연·인적 재난으로 인해 기록물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McCoy, 1978, 4-5).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이자 보완책으로 정부는 미 전역에 흩어져 존재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출판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후원했다.¹⁴⁾ 각 주와 지역 등 미 전역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13) 정작 근대시대에는 시민과 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 속에서 기록이 관리되고 보존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그들 국가가 걸어왔던 역사 기록을 수집하고 전통 문화·유산을 찾아서 그들 국가의 역사를 재현하고 국가적 삶의 미래를 구현하는 과업을 가장 유용한 핵심사안으로 여겼다. 따라서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자유, 평등 밖엔정신에 기반하여 시민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기록을 다루기보다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물보존소를 운영하며 국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노명환, 2010, 100~101)

14) 필라델피아 출신의 에베네저 하자드(Ebenezer Hazard:1744~1817)는 1790년대에 두 권의 역사기록물컬렉션(Historical Collection)을 출판했다. 피터 포스와 제이레드 스팍스는 남북전쟁 이전 30년 동안 많은 역사기록물들을 모아 여러 권의 텍스트로 출판하기도 했다. (McCoy, 1978, 4-5)

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기록물의 원본들을 모아 보존하기 시작했다. 역사기록물 원본이 없어지는 것을 막고 후대에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기록물을 모아 텍스트로 편찬하였다.¹⁵⁾ 이러한 역사 매뉴스크립트 보존 및 사본 편찬 활동은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을 보완하며 미국의 양대 기록물 관리 전통의 하나로 자리잡아 갔다.

2) 역사 매뉴스크립트¹⁶⁾ 관리 전통(Historical Manuscript Tradition)

18·19세기 미국의 독립과 건국과정에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이 시기 미국을 강타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열풍은 미국의 각 주나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당대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려는 원본 역사기록물 보존 운동으로 나타났다(Cox, 1983, 31~41). 미국 전역의 주에 흩어져 존재하는 역사 매뉴스크립트와 유물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서관과 역사학회는 역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과 역사적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존기관들이었다.

19세기 후반,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미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더욱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기록을 이용했다. 미국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미국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록을 분석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통합할

15) 1830년대 출간된 피터 포스(Peter Force:1790~1868)의 역사 사료집은 미국의 식민지 역사와 독립혁명사 연구에 주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제이레드 스팅스(Jared Sparks: 1789~1866)는 조지 워싱턴 서신집과 벤자민 프랭클린 문서 컬렉션, 독립전쟁 외교문서 집 등을 출판하였다.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Collections 1*, Boston, 1803; O'Toole, 2004, 60 재참조)

16) 매뉴스크립트(manuscript)는 레코드(records)나 아카이브즈(archives)와 같이 기록을 뜻하지만, 기록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 매뉴스크립트는 도서관이나 기록물 보존기관에 의해 특정한 주제나 기획을 갖고 수집한 기록물 콜렉션이다. 주로 수기(handwritten)나 인쇄(typed) 형태로 관련 인물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코드(기록)와 아카이브즈(보존기록)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주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수 있는 상징들을 만들어 냈다. 즉, 미국 의회와 정부는 국민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여러 주로 나뉘어 있던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기록물과 상징을 도구로 이용했다. 식민지 초기의 기록이든, 독립운동의 기록이든, 전쟁기록이든 당대의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역사가들은 1791년 메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지역의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최초의 메사추세츠 역사학회(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를 설립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세기 동안 역사 매뉴스크립트 관리의 전통 차원에서 각 주에 수십 개의 역사학회와 역사기록물 수집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의 차원에서 주립기록물보존소도 활발하게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각 주에 설립된 역사학회에서는 공공기록물도 수집되었지만 주로 개인의 사적 기록이나 서신, 일기, 저작원고, 연설 등의 역사적 매뉴스크립트와 물건 등이 수집되었다.¹⁷⁾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메사추세츠 역사학회에는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맡았던 존 아담스와 그의 가족들이 남긴 원본 기록과 토마스 제퍼슨의 자필사본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다.¹⁸⁾ 현재 미국 NARA에 미국 독립선언서의 원본이 보존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메사추세츠 역사학회에 보존되어 있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을 거쳐 현재의 NARA로 1952년에 이관되었다.

17) 위스콘신 역사학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리만 드레이퍼(Lyman C. Draper: 1815~1891)에 의하면, 이 시기 역사 매뉴스크립트의 수집은 미국 여러 주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진행되었다. 마차, 배, 기차를 타거나 때로는 걸어서 여행을 했으며, 개척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담았고 오랫동안 잊혀진 기록을 발굴했다. 원본을 구할 수 없는 원고나 신문, 인쇄물은 사본을 만들어 수집했다. 또한 원본 해독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기록물은 직접 필사하여 수집했다. (Harper, 1952, 206~207)

18) <https://www.masshist.org/collections/our-collections> 메사추세츠 역사학회 참조. (2024년 2월 13일 최종 접속)

〈그림 1〉 1952년 12월 13일 미국의 자유헌장을
미국 의회에서 국립문서보존소로 옮기는 장면



※ 출처: NARA (64-NA-1-434)

메사추세츠 역사학회의 뒤를 이어 1804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뉴욕 역사학회도 미국 건국 및 초기 역사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예를 들면, 1860년 이전의 재판소 기록물 컬렉션, 남북전쟁 기록물 컬렉션, 노예제와 재건 관련 기록물 컬렉션 등이다.¹⁹⁾ 미국 남북전쟁의 많은 기록들은 델라웨어 역사학회에서 보존하고 있다.²⁰⁾ 위스콘신 역사학회에는 1775년과 1815년 사이의 기록물인 드레이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Draper Manuscript Collection)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와 인디언 전쟁, 1812년 미·영간의 제2차 독립전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원본 기록물이다. 또한 이 컬렉션 안에는 군사 기록물이 다수 존재하는데, 특히 미국의 연금관리국에서 수집한 독립전쟁 참전용사들이 제출했던 수백 건의

19) <https://www.nyhistory.org/library/visit> 뉴욕 역사학회 참조. (2024년 2월 13일 최종 접속)

20) <https://www.dehistory.org/collections/> 델라웨어 역사학회 참조. (2024년 2월 3일 최종 접속)

주정부 병역관리 증명서의 사본들과 독립전쟁 연금신청자 정보를 색인화한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²¹⁾ 이처럼 각 주별로 설립된 역사학회는 미국의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보존소이자 도서관, 박물관의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되며 미국의 후손들에게 미국의 역사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19세기에 설립된 미국 각 주의 역사학회(설립연도 순)²²⁾

1. 메사추세츠 역사학회 1791년 설립	2. 뉴욕 역사학회 1804년 설립	3. 로드아일랜드 역사학회 1822년 설립
4. 메인 역사학회 1822년 설립	5. 뉴햄프셔 역사학회 1823년 설립	6. 펜실베이니아 역사학회 1824년 설립
7. 코네티컷 역사학회 1825년 설립	8. 인디애나 역사학회 1830년 설립	9. 버지니아 역사학회 1831년 설립
10. 켄터키 역사학회 1836년 설립	11. 조지아 역사학회 1839년 설립	12. 매릴랜드 역사학회 1844년 설립
13. 뉴저지 역사학회 1845년 설립	14. 위스콘신 역사학회 1846년 설립	15. 미네소타 역사학회 1849년 설립
16.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사학회 1855년 설립	17. 아이오아 역사학회 1857년 설립	18. 미시시피 역사학회 1858년 설립
19. 델라웨어 역사학회 1864년 설립	20. 몬타나 역사학회 1864년 설립	21. 캔자스 역사학회 1875년 설립
22. 콜로라도 역사학회 1879년 설립	23. 아이다호 역사학회 1881년 설립	24. 네브라스카 역사학회 1883년 설립
25. 애리조나 역사학회 1884년 설립	26. 오하이오 역사학회 1885년 설립	27. 하와이 역사학회 1892년 설립
28. 오클라호마 역사학회 1893년 설립	29. 오레곤 역사학회 1898년 설립	30. 미주리 역사학회 1898년 설립

21) <https://www.wisconsinhistory.org/Records/Article/CS15310> 위스콘신 역사학회 참조. (2024년 2월 14일 최종 접속)

22) 미국 각 주의 역사학회 개별 웹사이트 참조. (2024년 2월 최종 접속).

앞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역사기록물 보존기관이 활발하게 설립되면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을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역사연구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에 기반한 랑케식 역사서술방식이 역사연구방식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증거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기록을 이용하여 ‘있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의 역사를 재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역사 연구자들은 유럽 역사관의 영향을 받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 역사기록물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역사연구방법에 몰입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19세기에 유럽, 특히 독일로 유학하며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근대 역사학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도 역사학이 하나의 과학적인 학문분과로 활발하게 성장·발전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정확한 기록을 통해 현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역사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²³⁾

역사의 기본 단위로 국가와 민족을 상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권력자이자 엘리트 지도자의 활동과 사건이 역사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국정통치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적 활동들이 기록된 공공기록물은 국가기록물로 중요해졌다. 국가와 민족 차원의 역사기록 수집과 편찬, 관리·보존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각 주에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보존소이자 박물관인 역사학회가 19세기에 활발히 형성되는 것에 발맞추어 미국의 역사연구자들은 1884년 미국역사협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를 설립

23)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기록관리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이 미국대학에서 개설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기록관리 교육과 훈련을 위해 유럽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 워싱턴 D.C. 소재 어메리칸 대학교 내에 마련된 에른스트 포스너와 같은 유럽 아키비스트의 전문적인 강좌나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기록관리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였다. 미국역사협회는 역사 매뉴스크립트 위원회(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와 공공 아카이브즈 위원회(Public Archives Commission) 를 각각 1895년과 1899년에 설치하여 가장 먼저 역사연구에 필요한 원본 기록물을 발굴하는데 주력하였다(Cox, 1983, 32).

역사학자나 역사전문가들은 그들의 역사연구를 위해 기록을 발굴하고, 연구결과를 논문이나 역사책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이들은 원본 역사기록물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전문성을 발휘했다. 역사를 연구하는 일과 기록을 관리·보존하는 일이 역사학자나 역사전문가들에게는 크게 다른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역사연구자들은 원본 사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록물을 다루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평가, 정리, 보존하는 작업에 더 적합해 보였다. 특히 이 당시에 원본 역사기록물이 자연재해나 인재로 유실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학자들과 역사전문가들은 원본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이들을 한데 모아 출판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역사 매뉴스트립트 관리 전통이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보다 더 우세했다. 이는 미국의 기록관리체계에서 역사와 기록의 밀접한 연관성과 역사학계와 아키비스트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중요시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아키비스트의 자격요건으로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능과 기술을 넘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 통찰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역사가들이 나중에 아키비스트 1세대로 활동하며 방대한 기록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능과 기술에 함몰되지 않고 역사적 통찰력을 견지하며 균형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간이자 동인으로 볼 수 있겠다.

4. 미국국립문서보존소(현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설립과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보존 체계

1) 미국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의 설립

전국 초기 미헌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연방정부가 수립되었을 시기에도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기록물보존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에서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로 공무원들에게 있었다. 이들은 행정업무를 하다가 기록관리와 관련된 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체적이었다. ‘아키비스트’라는 기록관리 전문직과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다. 각 연방 기관의 장들이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기록 관리 및 정리의 정도가 달라졌다(Harper, 1952, 205). 연방기관의 공공기록물은 기관의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거나 대통령의 국정통치기록을 포함한 연방기록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의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보다는 한 개인의 혹은 위인의 사적인 기록물로 여겨졌다.²⁴⁾

1877년 내무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많은 연방기록물이 소실되었다. 자연적·인적 재해로 연방기록물이 계속해서 소실되는 것을 경험한 의회는 물론, 정부관료와 역사학계 사이에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할 연방차원의 국립문서보존소 설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24)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PRA) of 1978)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카터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NARA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되었다. 대통령기록물의 법적 소유권을 개인에서 공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가 관리하여 보존하였다. 이 법안이 공포된 후,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기록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선옥·조민지, 2020, 47-86)

역사학과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국립문서보존소 설립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역사학자이자 미국 의회도서관의 매뉴스크립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제임슨 프랭클린(Jameson Franklin)²⁵⁾은 이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립문서보존소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제임슨은 공공 기록·아카이브즈와 역사 매뉴스크립트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파하며 도서관이 공공기록물 보존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제임슨은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의 설립은 미국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Shelle, 1949, 104~105).

전대미문의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에 참여하면서 전쟁 및 외교 기록물과 전쟁지역에서 노획한 기록물, 확대된 행정조직에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 생산되었고 수집되었다. 갑자기 연방정부의 기록물이 폭증하자, 반세기의 진통 끝에 드디어 1934년 국립문서보존소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국가주도의 국가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보존하는 독립 연방기관인 국립문서보존소가 설립되었다. 마침내 미국은 미국의 상황에 맞는 연방기록물 관리체제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독립된 기관을 갖게 되었다.

국립문서보존소가 설립된 후 1935년에 실시된 첫 번째 사업은 국립문서보존소와 노동진흥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 함께 전국에 흩어진 채 방치되어 존재하는 연방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이었다.²⁶⁾

25) 제임슨 프랭클린은 메사추세츠 출신 역사가로서 존스홉킨스 대학, 브라운 대학,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다. 거의 25년간 카네기 연구소에서 창의적인 역사프로그램을 이끌었으며 미국역사협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의 창립멤버이자 초대회장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임슨은 미국 의회도서관 매뉴스크립트 관리과장과 미국사 위원장을 역임했다. 제임슨은 국립문서보존소 건립과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가장 오랫동안 참여하여 끝까지 노력한 인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의원들과 대통령에게 기록의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의회에서 국립문서보존소 설립 법안이 통과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Shelle, 1949, 100~103)

26) 1934년 국립문서보존소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했고 루즈벨트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1935년 국립문서보존소와 노동진흥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WPA)은 미

1933년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학문연구와 연관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사기록물조사(Historical Records Survey)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을 위해 역사가나 기록관리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고용되어 연방, 주, 지방정부의 모든 사설 및 공공 기록물보존소로 파견되었고 각 보존소에 소장된 기록물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기록물 컬렉션에 대한 가이드책자나 검색도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역사기록물 조사사업은 미국의 기록관리의 발전과 아키비스트들의 전문성 확대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O'Toole, 2004, 67-68). 국립문서보존소는 역사기록물조사(HRS)사업을 하면서 기록물관리경험을 실제로 쌓은 전문성있는 아키비스트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건물 지하나 사무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국무부 기록물을 비롯한 각 연방기록물로 국립문서보존소를 빠르게 채워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립문서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은 이관된 기록물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실험하면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해 갔다. 특정 주립기록물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도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은 유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직화된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 노선을 따르며 발전해 갔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기록물 폭증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남북전쟁을 전환점으로 1861년부터 1916년 사이에 연방기록물의 누적 총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시행, 제2차의 세계

전역의 연방기록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인 1936년 첫 번째 연방기록물이 국립문서보존소에 이관되었다. 첫 번째로 이관된 기록물은 미국 식품청(The U.S. Food Administration), 설탕균등화위원회(The Sugar Equalization Board), 미국곡물공사(The U.S. Grain Corporation)의 기록물이었다. 이 기관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량의 공급, 분배 및 보존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전쟁이 끝나자 이 기관의 기능은 사라지고 기관은 폐지되었다. 이 기록물들은 1936년 1월 7일에 국립문서보존소로 이관되기 시작했고 국립문서보존소로 이관된 최초의 기록물이 되었다. (Kratz, 2017)

전쟁 등의 비상사태로 연방정부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연방기록물의 생산량이 급증했다. 기록물 양의 증가는 기록물의 적절한 폐기와 보존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1934년 국립문서보존소의 설립 이후, 1937년에서 1947년 사이에 국립문서보존소로 입수되는 기록물 양의 폭증은 미국의 기록물관리·보존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NARA(당시 NARS)의 제3대 청장이었던 웨인 그루버(Wayne C. Grover)에 의하면, “1930년부터 1952년 사이에 생산된 연방기록물의 양이 미국의 지난 155년 역사를 통틀어 누적된 기록의 양보다 7배나 더 많았다.” (Grover, 1954, 100)

미국 역사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겹치며 1934년에 비교적 조용하게 등장했던 국립문서보존소는 기록물의 폭증으로 기록물보존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현용 연방기록물의 갑작스런 증가는 보존가치가 없는 연방기록물의 폐기와 영구적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기록물을 선별·평가하여 정리하고 보존하는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전쟁 중에는 정부의 모든 기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립문서보존소 내 인재들을 정부의 다른 연방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에 투입해야 했다. 국립문서보존소 내에 인력이 부족해지자 국립문서보존소 건물에 쏟아져 들어오는 기록물과 계속해서 누적되어 밀려있는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은 지체되었다. 아키비스트들은 처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증가하자 이에 따른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려야 했다.²⁷⁾

미국은 1950년대를 정점으로 기존의 기록물 관리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기록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를 미국

27) 1944년 회계연도에 잡힌 미국국립문서보존소의 직원 수는 215명이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54년, 215명에서 260명으로 10년 사이에 불과 45명이 증가했다. 이는 그 당시에 폭증했던 기록물의 증가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직원 수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미국국립문서보존소의 업무량과 업무증가에 따른 고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Grover, 1954, 104)

의 실정에 맞게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NARA(당시 NARS)는 현대기록물 관리·보존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업무 조직을 갖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증가하는 연방정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먼저, 1934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던 국립문서보존소는 1949년에는 미국 총무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소속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명칭을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에서 국립문서기록서비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이하 NARS)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국립문서기록서비스 하위 분과에 기록관리과(records management division)를 신설하여 기록물 관리업무(records management)와 아카이브즈 보존업무(archival administration)를 분리하였다. 국립문서기록서비스 내 기록관리과의 신설로 연방기관 내에서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요원들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여 아키비스트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다(Grover, 1951, 11). 또한 NARA(당시 NARS)가 비현용기록물인 아카이브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용·준현용기록을 통합적으로 모두 관리하는 기록물 관리·보존 전문 기관이 되었다.

2) 연방기록물센터(Federal Records Center)와 미국의 기록물 관리체계

미국에서 기록물 관리의 미국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장치는 바로 1950년 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연방기록물센터(FRC)라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기록물로 위기를 맞은 NARA(당시 NA)는 기록물을 NARA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현용기록물에 대한 1차 가치 평가 후 NARA 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록물만 이관하여 보존하는 중간 거점의 연방기록물센터를 설립했다. 연방기록물센터의 설립으로 아키비스트들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최근의 기

록물이나 현용기록물, 가치평가가 모호한 기록물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어졌다. 국립문서보존소 건물에 있는 아키비스트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기록의 보존과 활용 이외의 행정적인 일이나 본연의 업무 외의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키비스트들은 공공 아카이브즈(보존기록물)에 대한 영구기록물보존소 본연의 업무인 선별·평가, 정리·기술, 보존, 출판 등의 활용성을 보장한 작업에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었다.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업무에서 더 나아가 문화, 교육, 역사출판 활동을 장려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미국의 기록관리 문화는 역사가와 아키비스트가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정착되어 갔다(Grover, 1954, 100).

현재(2024년)까지 워싱턴 D.C. 중심에 위치한 NARA I과 매릴랜드 컬리지파크에 1984년에 설립된 NARA II를 포함하여 미 전역에 NARA 산하기관으로 18개의 연방기록물센터와 13개의 지역기록물보존소, 2개의 국가인사기록물보존소가 운영되고 있다.²⁸⁾ 이 외에, 15개의 대통령도서관 및 박물관이 존재한다. 연방기록물센터로 이관된 기록물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자 NARA(당시 NARS)는 연구자들이 기록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연방기록물센터가 있는 같은 건물이나 지역 내에 지역기록물보존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지역기록물보존소에는 해당지역의 연방기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지역 기반의 국립지역기록물보존소와 연방기록물센터는 같은 건물에 위치할 수도 있고 같은 지역이지만 서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다른 건물에 위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아틀랜타 연방기록물센터와 국립지역기록물보존소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시카고 연방기록물센터와 국립지역기록물보존소는 같은 장소의 건물에서 운영된다.

〈표 2〉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산하 국가기록물관리·보존 기관 운영지역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산하 국가 기록물관리 보존 기관 운영 지역	국립기록물보존소 (National Archives)	연방기록물센터(Federal Records Center)	국립지역기록물보존소 (National Archives)	국립인사기록 보존소
워싱턴 D.C.	NARA I			
매릴랜드 주 컬리워 파크(College Park)	NARA II			
조지아 주 아틀랜타(Atlanta)		운영	운영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Boston)		운영	운영	
일리노이 주 시카고(Chicago)		운영	운영	
콜로라도 주 데이톤(Dayton)		운영		
콜로라도 주 덴버(Denver)		운영	운영	
텍사스주 포트월스(Fort Worth)		운영	운영	
미주리 주 캔사스 시티(Kansa City)		운영	운영	
미주리 주 리스 서밋(Lee's Summit)		운영		
오하이오 주 킹스리취(Kingsridge)		운영		
캔자스 주 르넥사(Lenexa)		운영		
뉴욕 주 뉴욕시티(New York City)			운영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운영	운영	
메사추세츠 주 피즈필드(Pittsfield)		운영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Riverside)		운영	운영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운영	운영	
워싱턴 주 시애틀(Seattle)		운영	운영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St. Louis)			운영	
미주리 주 스페인시 레이크(Spanish Lake) *군인사기록물		운영		운영
일리노이 주 벨메이어(Velmeyer) *민간인사기록물		운영		운영
매릴랜드 주 수틀랜드(Suitland)		운영	운영	

각 연방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록들을 무조건 NARA에 이관하지 않고, 연방기록물센터의 기록물 관리자와 연방기관의 협력하에 기록물의 '1차 가치'를 선별·평가하고 폐기를 결정한다. 연방기록물센터에 보존된 기록물들은 잠재적인 NARA 이관 대상의 기록물이기도 하다. 1차 가치 평가 이후, 현용·준현용 기록물로서 NARA의 처분지침 승인을 받아 NARA로 이관되기 전 연방기록물센터로 이관된다. 현용·준현용 기록물의 활용이 끝난 후, 아키비스트에 의한 '2차 가치' 평가가 이뤄지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결정되면 NARA로 이관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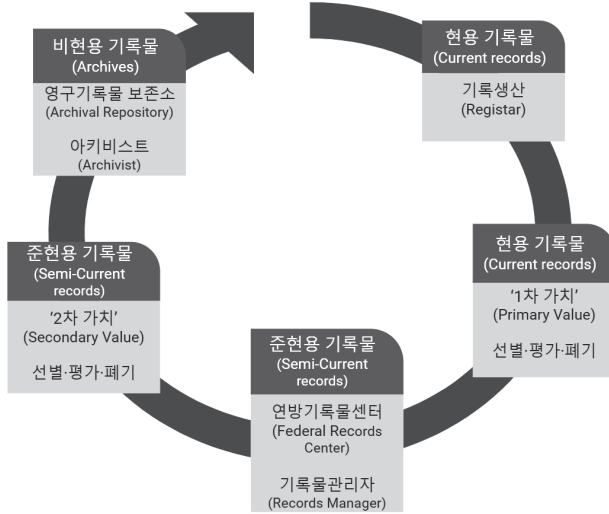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체계의 특징 중 하나인 연방기록물센터의 설립을 통해 NARA 아키비스트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미국 NARA의 제 3대 청장이었던 그루버는 급증하는 현대 기록물관리로 인해 가중되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비현용 기록물의 보존 업무와 현용·준현용 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키비스트가 현용기록 관리업무 단계에서도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전문가로서 활약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Grover, 1951, 7~8). 이러한 인식은 연방기록물센터에서 현용·준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물 관리자(records manager)라는 새로운 종류의 아키비스트가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용기록물의 관리업무와 비현용기록물의 보존활동은 각각 기본적으로 공통의 목적 안에서 많은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겹치는 업무가 존재하지만 비현용기록물을 다루는 아키비스트와 현용·준현용기록물을 다루는 기록물 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르다고 여겼다. 이에 NARA는 각 각의 업무 활동에 따른 기록물관리 매뉴얼과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대 행정업무의 확대와 복잡화로 인하여 현대 기록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용·준현용기록물 관리도 전문화된 경험과 능력이 필요했다. 그루버는 아키비스트가 기록전문가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역사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적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아키비스트가 그 방대한 양의 기록물에서 일반 국민이나 학자 등과 같은 기록물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증거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아키비스트가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통해 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전통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록물 관리자(records manager/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는 효율적인 관리팀의 일원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망 능력과 경험이 필수적이었다. 아키비스트와 기록물관리자 모두 그들의 위치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었다(Grover, 1951, 8~9).

3) 기록생애주기(Records Life-Cycling) 개념 도입

미국에서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역사학자이자 아키비스트인 시오도어 R. 쉘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에 의해 기록생애주기 개념이 도입되었다. 기록에도 수명이 있다고 보고 기록의 생산, 활용, 폐기 혹은 보존이라는 생애 주기에 따라 기록물을 현용(current records)·준현용(semi-current records)·비현용(archives)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별로 보편적이면서도 균형잡힌 기록물관리 원칙과 표준화를 추구하였다. 그럼으로써 현용·준현용기록에 대한 기록물관리업무와 비현용기록에 대한 기록물보존소의 보존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하였다. 각 단계의 기록물 속성에 따라 기록물의 물리적 위치와 기록물관리 방법론을 다르게 적용했다. 기록은 생산에서 폐기와 영구보존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 단계의 가치를 갖는데, 현용기록 단계에서 1차 가치 평가가 이뤄지고 영구 보존을 위해 준현용기록 단계에서 2차 가치 평가가 진행된다.

〈그림 2〉 미국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생애주기(Records Life-Cycle)



현용단계의 기록은 업무의 진행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생산된 기록으로 말 그대로 현재 활용의 가치를 가지며 업무진행 중에는 업무 담당자에 의해 관리된다. 준현용단계의 기록들은 관련 업무는 종결되었지만 다른 유사업무와 관련한 참고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연방기록물센터로 이관된다. 반면 비현용의 기록들은 관련업무가 완전히 종결되고 더 이상 참고의 가능성조차 없지만 생산 당시의 업무관련 상황에 대한 법적,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획득한다. 따라서 NARA는 현용 및 준현용 단계의 행정기록물 관리와 비현용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업무를 결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미국의 기록물 관리체계는 기록물 관리업무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기록물보존소(archival repository)업무에 현장경험과 학문적(역사·문화적)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NARA가 온전히 보존과 활용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1950년 연방기록물법에서 강조한 국가역사출판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NARA는 문화예술 및 역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공
공비용으로 역사저작물과 자료집의 출판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이는 NARA
가 역사적·문화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길을 열
어주었다.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역사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보존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나갔다. 또한 미국의 특수한 현실에 맞추어 현대 연방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지식과 기록관리 이론을 종합하
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4) 자유출처주의 도입

셸렌버그는 급증하는 현대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용을
위한 기록물과 비현용의 아카이브즈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미국화된 기록관리의 방법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미국 기록
물관리의 분류(classification), 정리(arrangement), 기술(description), 평
가(appraisal)에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을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셸렌버그
는 영국 힐러리 젠킨슨(Hilary Jenkinson)의 엄격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원칙²⁹⁾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독일의 자유출처주의를 수용하였다.³⁰⁾ 자

29) 19세기 말에 기록물 관리의 원칙으로 정립된 출처주의의 뿌리는 1841년 프랑스의 풍존
중(respect des fonds)의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풍존중의 원칙은 독일에
서 확대되고 발전되어 1881년 독일에서는 출처의 원칙(Provenienzprinzip)/ 등록소의
원질서원칙(original order)으로 불렸다. 독일에서 발전한 출처의 원칙은 네덜란드 출신
세 명의 아키비스트인 뮐러(Muller), 페이트(Feith), 프루인(Fruin)에 의해 유럽에서 축
적된 기록관리 경험 등과 함께 정리되어 1897년에 네덜란드 매뉴얼(Netherlands Manual)
로 출판되었다. 영국에서는 힐러리 젠킨슨에 의해 출처주의를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Shellenberg, 2002, 185-210)

30) 힐러리 젠킨슨은 본래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기록의 양이 많지 않았던 고문서를 관리하던
아키비스트였다. 그는 기록이 생산된 원래의 가치에 근거하여 기록을 평가·선별하고 원
질서 그대로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 이외의 제3자의
평가나 개입은 기록 생산자의 의도와 생산과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유 출처주의는 독일에서 브레네케(Adolf Brenneke)와 포스너(Ernst Posner)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는 엄밀하게 출처주의에 따라 기록을 정리·보존하지만 기록의 원질서 원칙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젠킨슨의 정통적인 출처주의에 충실하게 따르되, 기록의 가치 평가에서 아키비스트의 능동적인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원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브레네케로부터 아키비스트로 훈련을 받은 후 나치 체제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포스너는 미국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아키비스트들과 기록전문가들을 훈련시키며 당시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의 발전을 위해 활동했다. 포스너는 이 과정에서 쉘렌버그에게 자유 출처주의를 소개하였다(노명환, 2013, 317~320).

유럽에서 기록관리·보존 관련 경험을 쌓은 왈도 G. 틀랜드(Waldo Gifford Leland)를 중심으로 유럽의 출처주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³¹⁾ 그는 1909년 제1차 아키비스트 컨퍼런스에서 출처주의에 대해 언급한 중요한 논문인 “미국의 아카이브즈 관리 문제(American Archival Problems)”를 발표하였다. 틀랜드는 유럽의 기록물보존소에서 지켜지는 원칙인 프랑스의 ‘풍존증의 원칙(1841)’과 독일의 ‘원질서의 원칙(1881)’을 미국의 기록물관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랜드에 의하면, “아카이브즈는 출처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며, 아카이브즈가 생산되어 존재하게 된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현대 도서관의 분류 방법을 아카이브즈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재앙적인 것은 없다.”고 하였다(Berner,

만면, 쉘렌버그는 그 당시 급증하게 된 현대기록물의 보존·폐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록의 증거적·정보적 가치와 중요성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작업에 아키비스트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록의 생산자보다는 후대의 기록물 이용자(소비자)에게 더 중심을 두어 기록을 평가·선별하였다.

31) 왈도 G. 틀랜드는 클로드 H. 반타인(Claude H. Van Tyne)과 함께 1904년 미국 최초로 연방 아카이브즈(federal archives) 안내서인 “미국 정부 기록물 안내서(Guide to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를 출판하기도 했다. (Berner, 1983, 14~16)

1983, 14~16; Shellenberg, 2002, 196~199). 사실,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주제 중심의 도서관 분류나 관행이 더 우세했다. 그러나 1910년부터 미국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전통은 역사 매뉴스크립트 전통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매뉴스크립트 전통의 도서관 관행과 원칙이 공공 기록 및 아카이브즈 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이론의 핵심인 분류, 정리, 기술에서 출처주의 원칙의 적용은 공공 기록·아카이브즈를 관리하는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원칙이 되었다. 셸렌버그는 이러한 노력의 선두주자였다.

5) 신기술에 따른 기록물 이용의 개선

NARA가 설립된 이후, 이용자의 기록물 열람 서비스 영역에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검색도구 개발과 마이크로필름의 출판 프로그램으로 미국 기록물관리체계의 민주화를 앞당겼다. 미국의 자동화 신기술을 이용하여 미 전역에 서로 다른 소장기관이나 출처의 기록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해 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를 위한 표준기술포맷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이용자를 위한 목록, 인벤토리, 색인 작업의 자동화, 검색도구 개발이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NARA는 역사·문화적 연구가치가 있는 역사 기록물의 사본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만들어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기록물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마이크로필름 사본 기술은 기록물에 대한 기록보존소의 독점권과 결별하고 기록관리·보존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출발이었다(Posner, 1955, 211~212). 또한 그 당시 NARA는 마이크로필름 사본의 사용으로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아키비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기록의 공공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민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미국의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실현되는 장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현대 기록의 생산 메커니즘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제기하는 거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역사적 현실을 피하지 않았다. 기존의 미국 특유의 전통적 기록관리의 특수성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NARA는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배태된 기록물 관리체계는 통일된 원칙과 절차, 표준화를 추구하면서 미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미국화’된 기록물관리 체계가 미국 내에 자리잡아 갔다.

5. 맺음말

1) 요약과 정리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록물관리 전통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20세기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미국의 특수한 역사와 현실에 적합한 구조의 현대 기록물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서구에서 후발주자로 국가차원의 기록물보존소를 설립한 미국이 단기간 내에 세계의 기록학계는 물론 기록물관리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견지하며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던 동인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 중심에는 미국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있다. 즉, 미국의 기록물 관리는 기록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공자산, 공공소유 개념이 확고하게 전제되어 있으며 그 기원은 자치 시민으로서 혹은 미국인으로서 기록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태동과 미국민의 일상의 삶, 그리고 기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그들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기록과 아카이브즈를 통해 정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며 동시에 미국민들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였다. 미국민의 기록에 대한 공공소유와 공공자산의 개념은 미국의 연방 기록물법과 기록물관리체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발전해 왔던 공공 기록·아카이브즈 전통과 18·19세기 민족주의의 급부상으로 등장한 미국의 역사 매뉴스크립트 전통이 상호 보완하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의 한 축을 이어왔다. 20세기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서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 더미로부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구보존기록물을 제대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당시 미국의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야만 했다. NARA는 미국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제기되었던 기록물관리의 거대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왔다.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기록물관리의 역사적 경험과 실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의 역사적 현실이 반영된 미국적인 특수성을 지님과 동시에 보편적인 기록관리의 원칙과 기술, 표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미국화’된 기록관리체계를 구성해 왔다. 미국의 역사와 경험에서 축적된 기록 및 기록관리에 대한 철학 그리고 실무가 투영된 미국의 기록관리체계에서 보여지는 몇가지 큰 특징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기록물 관리업무(records management)와 아카이브즈 보존관리업무(archival administration)를 분리하고 있지만, NARA라는 한 기관에서 이 두 개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업무를 분리하여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켜내고자 했다. 기록물을 선별·평가하는데 아키비스트의 역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그들 고유의 업무를 존중하며 아키비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물을 생애주기에 따라 현용단계, 준현용단계, 비현용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

였다. 현용·준현용 단계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중간 거점인 연방기록물센터를 설립하였다. 연방기록물센터에서 2차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영구기록물보존소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의 비용 절감은 물론, 방대하게 생산되는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차 가치 평가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역사·문화 기록물을 2차 가치 평가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공공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의 출처주의원칙과 원질서원칙을 따르나 방대한 기록물에 대한 선별과 평가작업에 아키비스트의 역량이 개입할 수 있는 자유출처주의를 수용함으로써 기록물의 분류와 정리작업에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의 신기술을 이용한 검색도구의 개발, 표준화 도입, 마이크로필름 출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왔다. 기록의 생산자 측면에서의 관리나 보존 활동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기록 활용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국가 기록의 주인은 기록의 소비자이자 이용자인 국민 대중이라는 공공소유권(public ownership) 개념의 철학이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에 장착되어 있고 투영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각 시대상에 맞는 기록물관리·보존의 기능과 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 토대가 되는 미국의 역사교육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강조한다. 바로 그들 자신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인간활동의 끊임없는 산물이자 계속 변화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록물을 다루는 기록관련 종사자들은 인간활동의 양상과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기록물 관리의 철학적 근간은 현재 NARA의 전문 아키비스트들 대다수가 대학원 이상의 미국 역사학, 정치학 혹은 정부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경력이나 주립 혹은 연방, 교회, 기업 등의 기록물보존소에서 전문적으로 일한 경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정보를 수집, 평가, 분석, 종합하는데 역

사학과 같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서의 전문직 경력은 아키비스트로서 활동하는데 주요한 경력으로 여겨진다(노경란·박희영, 2004, 171~172). 미국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생산 맥락과 구조, 그리고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의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NARA 제3대 청장인 그루버는 기록물관리의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교육 및 훈련을 넘어 기록물의 내용과 역사 연구를 중시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된 과거를 다룹니다. 그가 기록물을 다루는 기술이 아무리 능숙하고 기록물 정리 원칙을 의미있고 완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선반 위의 빈 그릇을 다루는 기술자라면 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그릇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키비스트는 (아키비스트로서)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가장 훌륭한 최고의 기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연구입니다.” (Grover, 1954, 106~107)

NARA는 특정부서나 부처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고, 인문학적 통찰력을 지닌 역량있는 아키비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기록과 기록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기록을 미국의 공공유산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는 미국에 국가차원의 기록물 보존소인 NARA가 설립되자 그들의 독립적인 위상을 이용하여 빠르게 기록물관리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국가의 기록물을 NARA 한 곳으로 집중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모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는 시대마다 야기되는 조직의 문제와 기록관리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대미문의 코비드 19 팬데믹을 경험하며 또 한번의 고비를 맞았지만 기존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출처주의 방식의 기록관리에서 수평적인 방사형의 네트워크적 구조를 최대한 실현시켜 이용자 중심의 카탈로그를 2022년 11월에 선보였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NARA는 이용자의 발걸음이 끊기는 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NARA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시도했다. 기록은 공공의 소유물 이기에 국민 대중이 접근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능력을 부리고 있었던 아날로그 기록물의 디지털이제이션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미국의 NARA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NARA 소장기록물을 안방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NARA 전반기 과거의 발전은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와 실무 원칙을 세우는 기록의 생산자 중심의 역사였다. 그러나 후반기 미래의 발전은 기존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출처주의 방식과 수평적인 방사형의 네트워크적 구조를 최대한 균형적으로 실현하여 기록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실험과 실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기록을 국가나 아키비스트가 독점하지 않고, 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공공 재산 혹은 공공소유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여정 속에서 축적된 것이다.

2) 제언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기록관리·보존체계에 있어 후발주자라 할 수 있다. 자금의 디지털 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기록관리의 신기술 도입과 전자·디지털기록에 의한 업

무환경의 변화로 또 한 번의 기록물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이미 모든 행정기록의 전자·디지털화가 가장 신속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에 걸맞는 전자·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론이 학계와 실무에서 확산되고 정립되어 가고 있다. 거대한 시대변화의 흐름에 조응하는 기록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걷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기록관리·보존을 위한 한국 고유의 역사성을 되돌아 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 초기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자치시민 혹은 미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주권을 함의하고 있는 미국의 기록 및 아카이브즈의 기원과 관리·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기록 및 기록관리·보존에 대한 정책과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발전적 속성을 갖고 있다. 적어도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성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실기를 잘 분석한 후, 그 위에 한국 고유의 기록관리 정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디지털환경에서 한국 고유의 기록의 역사성과 창의성이 기반된 기록관리 체계를 재설계한다면 K-아카이브즈(기록물보존소)가 전세계에 기록물관리 모델로 수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범위가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과 21세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국의 기록물관리체제의 변화양상을 다루지 못했다. 미국에서 NARA의 설립과 더불어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기록물관리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확산됨에 따라 1960년대 말부터 아카이브즈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보존소의 종류도 다양화되었다. 1960~7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운동, 여성운동, 성평등운동, 베트남전쟁 등 격동의 사회를 지나고 있었다. 이 당시 각 단체나 공동체들은 정체성과 공동체의 기록물보존소를 만들어 종교기록물보존소, 기업기록물보존소, 인물기록물보존소, 문화기록물보존소 등 다양한 종교, 인종, 그리고 사회의 특정한 사

건이나 주제에 초점을 둔 주제 기록물보존소의 연구컬렉션이 활발하게 수집됨에 따라 소수 엘리트계층이나 지도자들보다는 다수의 국민 대중인 보통 사람들에 관한 기록물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왕성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의 특징은 주립기록물보존소나 역사학회에서 미국의 역사 형성의 주체를 소수 엘리트계층의 기록물 중심으로 수집하여 역사를 의도된 노력의 산물로 만들었다. 이처럼 역사기록물 연구대상의 주체가 국가 지도자나 소수 엘리트계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이 시기와 그 이후의 미국의 기록물관리와 다양한 기록물보존소의 발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도 전자기록이 생산됨에 따라 NARA는 전자기록물을 이관받고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보존시스템(Electronic Records Archives System)을 구축해 왔다. 21세기 디지털 전환시대를 지나면서 이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와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사성에 기반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차 사료〉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Engrosse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RG360, Miscellaneous Papers of the Continental Congress, 1774-1789, M332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G11,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9/17/1787-9/17/1787.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apers of The Continental Congress 1774-1789, RG360, M247.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gisters of Enlistments in the United States Army, 1798-1914, RG94, M233.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ransfer of Charters of Freedom to the National Archives, RG64, Historical Photograph File of National Archives Events and Personnel, 1935-1975, 64-NA-1-434.

<단행본>

- 노명환, 배은경, 조민지, 고임정, 이선옥, 이정연(2020). 세계의 최고 행정기관 기록물 이관: 사례와 쟁점. 선인.
-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조은글터.
- 셀렌버그 Theodore R. (2002). 이원영 역.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 신정현 (1994). 정치학, 법문사.
- 이선옥, 조민지 (2020). 미국 대통령기록의 이관, 세계의 최고 행정기관 기록물 이관: 사례와 쟁점. 선인, 47-86.
- 한국기록관리학회 (2020).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 Berner, Richard C. (1983).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and London.
- McCoy, Donald R. (1978). The National Archives: America's Ministry of Documents 1934-1968.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O'Toole, James M. (1990).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O'Toole, James M. (2004). 이승역 역, 기록의 이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 번역 총서 50. 진리탐구.

<연구논문>

- 노경란, 박희영 (2004). 북미지역 기록관리체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164-191.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14), 359-388.
- 노명환 (2010).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호와 미래 발전방향: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 95-119.
- 노명환 (2012). 역사연구와 기록관리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랑케의 역사주의와 실증사학에 대한 본질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의 검토와 함께. 역사문화연구 (41), 145-172.

- 노명환 (2013).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구* (45), 313-358.
- 박종연 (2020).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의 역사성 연구: 1919~1950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윤용희, 윤이화 (2005). 미국의 건국정신과 협법정신의 함의. *사회과학* (17), 1-38.
- 정경희 (2008). 미국 헌법의 제정과 연방공화국의 건국. *역사학보* (198), 255-283.
- Carlin, John W. (2001). Building NARA's Archives of the future. *NARA Prologue* 33(1).
- Carlin, John W. (2002).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of the People. *NARA Prologue* 34(3).
- Cox, Richard J. (1983). American Archival History: Its Development, Needs, and Opportunities. *American Archivist* 46(1), 31-41.
- Harper, Josephine L. (1952). Lyman C. Draper and Early American Archives. *American Archivist* 15(3), 205-212.
- Grover, Wayne C. (1951). Recent Developments in Federal Archival Activities. *American Archivists* 14(1), 3-12.
- Grover, Wayne C. (1954). The National Archives at Age 20. *American Archivist* 17(2), 99-107.
- Hondefield, Jacob (1944). Archives-What Are they?. *American Archivist* 7(2), 128-129.
- Kratz, Jessie Kratz (2017). The First Records. *NARA Prologue* 49(2).
- Fitzroy, Herbert William Keith (1938). The Part of the Archivist in the writing of American Leag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1(3), 118-129.
- Gordon, Robert S. (1971). In search of Pre-American Ancestors- A New Approach, *American Archivist* 34(3), 251-257.
- Musick, Michael P. (1995). Civil War Records: An Introduction and Invitation. *NARA Prologue* 27(2).
- Posner, Ernst (1940).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3(3), 159-172.
- Posner, Ernst (1955). The National Archives and Archival Theorist. *American Archivist* 18(3), 207-216.
- Shelle, Fred (1949). Franklin Jameson in National Archives, *American Archivist* 12(2), 98-130.

Trudy H. Peterson (2001). 이상민 역.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4), 197-212.

Ziegler, Alexander (2006). From Colonies to Nation: The Emergence of American Nationalism, 1750-1800. Annual Review of Undergraduate Research.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hool of Languages, Cultures, and World Affairs. College of Charleston 5, 347-375.

〈법령〉

국회도서관 (2010). 미합중국 헌법.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전문 번역본 1. 466-481. Public Law 113-187. The Presidential and Federal Records Act Amendments of 2014. 44 U.S.C.

〈참고 사이트〉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 <http://www.nara.gov>

미국무성. 메이플라워 협약서(1620). <http://www.usinfo.state.gov/infousa/>

미국 각 주의 역사학회 웹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